

공지사항

2004년도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계획 공고 및 공모

과학기술부는 11월 17일(수) 2004년도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12월 7일(화)까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신청을 받는다.

▲ 지정근거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대한 지원내용

- 방사선비상진료용 응급장비 지원 및 유지보수비
- 방사선비상진료관련 국내외 교육·훈련비
- 방사선비상시 의료지원비
- 각종방재훈련 참가지원비
- 방사선비상진료 Workshop 개최
- 기타 방사선비상진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신청자격 및 지정규모

-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 13개 내외
 - RI이용 산업체 10개 이상 소재지역 및 원자력

발전소 인근지역의 보건소 또는 지방공사의료원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 4개 내외

- 현재 지정·운영중인 10개 기관을 제외한 지역의 국립대학교 병원 및 국군의무사령부 이하 군병원

▲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

가. 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

○일반기준

-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하여 방사선비상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 방사선피폭환자외의 환자와 구분하여 방사선 피폭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구역을 확보할 것
- 방사선피폭환자의 외래진료가 가능할 것

○개별기준

- 시설기준

시설	기준 개수	현황	기 준
방사선피폭환자 진료구역	1		1병상 이상을 설치할 것
검사실	1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방사선실-일반촬영실	1		-
수술실(처치실)	1		간단한 수술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1병상을 확보할 것
원무행정실	1		당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과 별도로 입·퇴원 및 의료보험업무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의사당직실	1		의사 1인 이상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일 것
보호자대기실	1		-
주차장	1		구급차 2대를 포함한 4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 검사실은 당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인력기준 : 의사(전문의) 1인 이상, 간호사 3인 이상
 - 장비기준 : 방사선피폭환자 의료관련 장비, 일반 의료관련 장비 등 총18종 22대
- 나.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
- 일반기준
 -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하여 방사선비상진료를

- 할 수 있는 시설 · 인력 및 장비를 갖추는 것
- 방사선피폭환자외의 환자와 구분하여 방사선 피폭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구역을 확보할 것
- 방사선피폭환자의 입원진료가 가능할 것
- 개별기준
 - 시설기준

시 설	기준 개수	현 황	기 준
방사선피폭환자 진료구역	1		2병상 이상을 설치할 것
검사실	1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방사선실			
-일반촬영실	1		-
-CT촬영실	1		-
-필름현상실	1		-
수술실			
-대수술실	1		회전익항공기의 착륙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착륙장과 곧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소수술실	1		
중환자실의 병상	10		-
입원실의 병상	300		-
원무행정실	1		당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과 별도로 입 · 퇴원 및 의료보험업무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의사당직실	1		의사 2인 이상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일 것
보호자대기실	1		30인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주차장	1		구급차 2대를 포함한 4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 검사실, 방사선실중 CT촬영실, 수술실 중 대수술실, 중환자실 및 입원실은 당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인력기준 : 의사(전문의) 6인 이상, 간호사 12인 이상, 그 밖의 인력(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방사선안전관리자)
- 장비기준 : 방사선피폭환자 의료관련 장비, 일반 의료관련 장비 등 총25종 39대

▲ 선정절차 및 일정

- 공고(11월 17일(수)) → 신청(12월 7일(화)까지) → 심의(12월 중순) → 선정 · 통보(12월 말)

▲ 신청서류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1차 또는 2차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시설, 인력, 장비)현황을 표시하여 제출
- 방사선비상진료시설, 인력, 장비 등의 운영계획서

▲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제출기간 : 2004. 11. 17(수) ~ 12. 7(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우427-715)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2동 723호 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

제9차 세계핵의학의 학술대회 개최 안내

세계핵의학회(회장 이명철)는 제9차 세계핵의학 학술대회를 2006년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 대회는 핵의학 학술활동과 학문교류를 위해 지난 1974년 창립된 세계핵의학회가 4년마다 세계 5대륙을 돌며 여는 학술대회며, 우리나라가 지난 2000년 9월 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핵의학회 각국 대표자 총회에서 차기 세계핵의학회 회장국(2002년부터 2006년까지)으로 선출된 바 있다.

본 학술대회는 미국, 유럽,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각국으로부터 약 3,000명의 참가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본 학술대회의 준비를 위해 공식홈페이지(www.wfnmb.org) 운영 및 분과위원회 조직 등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계핵의학회 공식홈페이지에 학회 조직위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자문위원리스트가 업로드 되어 국내외 각 회원에게 홍보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 홍보가 본 학술대회는 물론 유관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 대회명 : 제9차 세계핵의학회 학술대회

나. 일 정 : 2006. 10. 22 ~ 27(6일간)

다. 개최지 : 대한민국 서울 COEX

라. 문의처 : 제9차 세계핵의학회 학술대회 사무국

(☎02-763-0365~6)

홈페이지(www.wfnmb.org)

12월 행사안내

개최일정	기관명	행사명	개최장소	연락처
'04.12.1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2004년 한·중·일 협력회의	중국 북경	02)3411-6494 (www.ri.or.kr)
'04.12.3	대한방사선치료기술학회	2004 정기총회 및 심포지움	삼성서울병원	02)3410-2608 (www.krta.org)
'04.12.3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면허소지자보수교육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02)3411-9261 (www.ri.or.kr/cyber)
'04.12.14~15	"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
'04.12.7~9	"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	"	"
'04.12.23	"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	한림대학교(춘천)	"